

구미시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구 미 시

구미시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1. . .

제출자 : 구미시장

1. 제안이유

무주택공무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공무원 주거안정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의 설치·구성 및 용도 등(안 제2조~제5조)

나. 기금관리 공무원(안 제6조)

다. 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설치·구성 및 운영(안 제7조~제10조)

라. 업무위탁 등 용자 및 임대업무에 관한 사항(안 제11조~제15조)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본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붙임)

다. 합 의 : 감사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

구미시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 소속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구미시 공무원 주거안정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구미시 소속 공무원의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미시 공무원 주거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미시 선산읍 교리 1377번지 매각대금
2. 기금운용으로 발생한 이자수입금
3. 융자상환금, 차입금, 예수금 등
4. 그 밖에 수입금

② 시장은 연간 융자계획에 따른 기금소요 예상액에서 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기금수입금을 제외한 부족액을 출연금으로 매 회계연도 세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공무원임대를 목적으로 한 구미시 관내 전용면적 60m²이하 규모의 아파트 매입
2. 공무원 주택전세자금의 용자
3. 공무원 주택매입(신축포함)자금의 용자
4. 여유자금의 예탁 및 예치
5. 그 밖에 공무원의 주거안정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기금운용 담당부서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 기금운용 담당부서과장
3. 기금출납원 : 기금운용 담당부서 기금업무 담당

② 기금운용관 및 분임기금운용관에게는 「지방회계법」의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을, 기금출납원에게는 같은 법의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을 각각 적용한다.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구미시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기금운용관이 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후생복지 관련 예산·정책·재산관리·보건·복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금융, 보험, 회계 전문가

3. 그 밖에 관련 분야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자

③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임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정기회의 :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해당년도의 기금결산 보고서를 심의함.

2. 임시회의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소집함.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으로 한다.

④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용자 및 입주자 자격) 용자 및 입주자의 자격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구미시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제12조(용자금액 및 조건) 자금별 용자금액 및 이자율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연체시 이자율은 제15조에 따른 수탁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에 따른다.

제13조(용자금 일시상환) 다음 각 호의 경우 미상환한 원리금은 일시에 상환하여야 한다.

1. 용자금 수령자의 퇴직 또는 타 지역 전출시
2. 용자금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이 밝혀진 경우
3. 용자금 상환을 연속 3회 이상 연체할 경우

제14조(퇴거)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입주자격을 상실하며,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퇴거해야 한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공무상 또는 기타 사망으로 인하여 공무원 신분을 상실한 경우
3. 입주 후 퇴직 또는 다른 기관으로 진출가는 경우
4. 1년 이상 휴직한 경우(단, 질병, 육아, 가사휴직은 제외)
5. 공동생활을 해치거나 이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사용료를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제15조(융자업무 위탁 등)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융자 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취급 수수료 지급 등 위탁대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제16조(관계규정의 준용) ① 기금은 세계현금의 수입·지출·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의 예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구미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구미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생략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생략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생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담당하는 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③ ~ ⑥ 생략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구미시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지급(안 제10조제4항) 및 기금을 통한 아파트 매입, 주택전세·매입자금의 융자 등(안 제5조)에 따른 재정의 소요가 예상됨.

2. 미첨부 근거 규정

- 「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안 제5조에서 규정한 용도로 기금을 운용함에 따라 세출의 발생이 예상되나 기금 운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비용의 구체적인 추계가 어려움
- 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지급에 따른 비용이 연 1억원 미만으로 예상됨
 - 산출내역

내 용		산출내역	금액
구미시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회 참석수당	100천원×6명×2회	1,200천원

※ 위원회 참석수당 산출근거 : 70,000원(기본) + 30,000원(초과)

4. 작성자

회계과 지방행정서기 황보미 (054-480-5073)

소 관 부 서		회 계 과
입 안 자	과 장	지 영 목
	담 당	박 정 희
	담 당 자	황 보 미 (480-5073)